

의안번호	제 2024 - 12호
보 고 연 월 일	2024. 4. 29. (제131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1
II. 전문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2
1. 개요	2
2. 신규 위촉 대상자	2
3. 위촉장 수여식 개최	2
4. 전문위원 구성	3
III.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4
1. 개요	4
2. 추진 경과	4
IV. 제9기 하반기 설정 및 수정 대상범죄 양형자료 조사 및 결과분석 ...	5
1. 개요	5
2. 양형자료조사 내용	5
3. 통계분석 내용	6
V.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7
1.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접수의견 보고	7
2.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팀 접수의견 보고	7
3.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7
4. ‘국민신문고 게시판’ 접수의견 보고	11

5. 민원 우편 접수 의견 보고	14
-------------------------	----

□ [별지1]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15
---------------------------	----

□ [별지2] (사)동물권행동 카라 공문	16
------------------------------	----

□ [별지3]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팀 의견서	21
---------------------------------	----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 회의	제161차	2024. 4. 15. 15:00	○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검토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검 토

II. 전문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1. 개요

- 2024. 3. 27.자로 김용민 전문위원 사임
-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위원 위촉

◆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제8조 (전문위원)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2. 신규 위촉 대상자

- 이해란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2024. 4. 1.자)

3.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일 시: 2024. 4. 29.(월) 15:30
- 장 소: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위촉장 수여: 양형위원회 위원장
- 위촉대상자: 이해란 신임 전문위원

※ 신임 전문위원의 자세한 경력은 [별지1]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기재와 같음

4. 전문위원 구성

[2024. 4. 29. 기준]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최초 위촉일
법원	김세종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2023. 3. 28.
	이혜란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2024. 4. 1.
	이혜량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판사	2024. 3. 2.
검찰	정현주	대검찰청 양형정책관	부장검사	2023. 10.13.
	이성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검사	2024. 2. 19.
변호사/ 군법무관	김현아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	2023. 3. 7.
	최익구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2021. 8. 17.
교수/ 전문가	한상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 5. 16.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2023. 4. 12.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 8. 20.
	윤지영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본부장	2023. 9. 9.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 7. 5.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 본부장	2021. 7. 5.

Ⅲ.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1. 개요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양형기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에서 의결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스토킹 양형기준, 마약 수정 양형기준』을 관보 게재를 통하여 공개하였음

2. 추진 경과

- 2024. 3. 25.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에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스토킹 양형기준 의결
- 2024. 4. 15. 행정안전부의 관보등록시스템에 접속 / 등록 요청
- 2024. 4. 19. 양형기준 관보 게재
(<http://gwanbo.go.kr>)

IV. 제9기 후반기 설정 및 수정 대상범죄 양형자료 조사 및 결과분석

1. 개요

- 제9기 후반기 대상범죄군 중 동물보호법위반 범죄, 공중밀집장소에서
의 추행 범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범죄, 피감독자(피보호자)
간음 범죄에 대하여 양형자료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자료 등을 제공함
으로서 양형기준의 설정·수정안 연구 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 범죄유형의 세분화, 범죄유형별 기준형량,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양
형인자 추출, 양형인자별 가중치 등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통
계자료 추출

2. 양형자료조사 내용

(1) 조사 대상범죄

-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는 2018. 3. 22.부터 2023. 12.까지, 공중밀집장
소에서의 추행 범죄는 2020. 5. 19.부터 2023. 12.까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범죄는 2018. 10. 16.부터 2023. 12.까지, 피감독자(피
보호자)간음 범죄는 2018. 10. 16.부터 2023. 12.까지 각 선고된 사건
을 대상으로 함

(2) 조사 기간

- 2024. 3. 18.(월)~ 3. 27.(수)

(3) 조사 방법

- 양형자료 분석관 14명 및 서무행정관이 2~3명을 1개 팀으로 구성하여
전국 41개 지방법원(지원) 및 이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지청)에 방문
하여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형정보시
스템에 입력

(4) 조사 경과

- 예정된 조사기간 동안 총 622건을 조사하여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입력 및 자료 정리 중임

3. 통계분석 내용

- 수집된 양형자료에 대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할 예정임
 - 각 장에는 사건 수, 선고내역 등을 포함한 전체 현황을 나타낸 다음, ① 전체 범죄군의 조사 인자에 대한 빈도표를 제시하고, ② 분산분석 및 T-test의 방식¹⁾을 이용하여 양형인자에 따른 징역형의 형량 차이를 분석하며, ③ 카이제곱 검정 방식²⁾을 이용하여 양형인자에 따른 실행·집행유예 여부를 분석함

1) 각각의 양형인자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독립변수의 항목이 2개 일 때는 T-test를 사용하고, 3개 이상일 경우에는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을 사용하는데, 카이제곱 검정 방법과 다른 점은 종속변수가 연속형 변수(형량)라는 것임. 분산분석 및 T-test는 각 양형인자의 항목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유의확률(p) 값이 유의수준(0.05) 보다 작은 경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 할 수 있음

2) 양형인자 각각의 분포에 따른 집행유예 여부 등과 같이 두 변수(문항)간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분석방법으로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이라고도 함. 독립변수(양형인자)의 준부에 따른 종속변수(집행유예 여부)의 분포를 분석하는 것으로 유의확률 p값이 유의수준 값보다 작으면 유의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게 됨

V.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접수의견 보고

(1) 동물학대 양형기준 설정 관련 주요 사례 제출(2024. 3. 25.)

○ 공문 [별지2]

(2) 주요내용

○ 단체에서 대응했던 주요 사례와 관련된 의견 제시

○ 동물학대 양형기준 마련시 검토 요청

2.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팀 접수의견 보고

(1) 양형기준 신설 관련 의견서 제출(2024. 4. 2.)

○ 의견서 [별지3]

(2) 주요내용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형사처벌 양형기준 신설 요청

3.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1) 개요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2)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4. 04. 05. 까지 총 204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4. 03. 10.(1)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엄벌 요청
2	2024. 03. 18. ~2024. 03. 23.(2)	○개별사건 처벌과 관련한 반복 민원

3	2024. 03. 22. ~2024. 04. 01.(60)	○동물학대범죄 처벌 강화 요청
4	2024. 03. 22.(1)	○동물학대관련 사이트 폐쇄 요청
5	2024. 03. 23. ~2024. 04. 05.(45)	○개별사건 강력 처벌 요청
6	2024. 03. 23. ~2024. 03. 30.(79)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강력한 양형기준 설정 요청
7	2024. 03. 23. ~2024. 04. 05.(15)	○동물보호법 강화 요청
8	2024. 03. 24.(1)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문의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사건의 판결 결과나 선고 형량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양형위원회에서는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할 예정에 있으므로, 귀하의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반복 민원으로 별도의 회신 없이 공람 종결하였습니다.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귀하의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5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 사건의 수사, 처벌, 형량 등과 관련하여서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귀하의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 관하여는 양형

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6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에서는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7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귀하의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8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일반사기에 해당하는 범죄들 상호간,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들 상호간은 각각 동종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이 적용되고, 일반사기 범죄와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해서는 이종경합범 처리의 예에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2023 양형기준 153쪽 참조).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4. ‘국민신문고 게시판’ 접수의견 보고

-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4. 04. 05. 까지 총 7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민원 요지
1	2024. 03. 09.(1)	○특수상해, 특수폭행, 살인미수 양형기준 강화요청
2	2024. 03. 10.(1)	○처벌강화 적극 추진 요청
3	2024. 03. 15.(1)	○간통죄에 대한 문의
4	2024. 03. 15.(1)	○반성 및 공탁에 의한 감형 반대
5	2024. 03. 20.(1)	○양형위원회에 대한 의견
6	2024. 03. 28.(1)	○양형기준 개편 요구
7	2024. 04. 04.(1)	○형량 강화 요청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양형 강화 취지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입니다.

- 개별사건의 양형 및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해당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심리를 통해 결정할 재판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6번, 7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3 제5항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양형위원회 위원은 법원조직법 제81조3의 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법학 교수 등을 성별, 경력, 전문성, 연령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촉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기하신 사유가 법원조직법에서 정한 위촉 결격사유나 해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5. 민원 우편 접수 의견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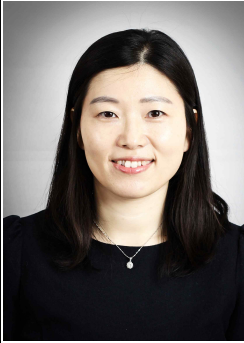
○ 회신 완료 접수 의견(2024. 04. 05.까지 총 1건)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4. 03. 21.(1)	○ 개별사건에 대한 문의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개별 사건의 양형인자 및 판단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양형심리를 통해 결정할 재판사항에 해당하므로,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별지 1]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성 명	이 혜 란 (李 惠 蘭)
	생년월일	1978. 10. 16.
	소속	서울고등법원
	직위	고등법원 판사
학 력		
○ 1997. 문경 점촌고등학교 졸업		
○ 2001.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주 요 경 력		
○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2006. 사법연수원 수료(제35기)		
○ 200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0.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 2014. 2.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17.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9. 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파견~2021.2.22.)		
○ 2021. 2. [現]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별지 2] (사)동물권행동 카라 공문

동물권행동 카라

수신자 양형위원회
(경유)

제 목 동물학대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주요 사례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설정과 관련된 주요 사례와 함께 그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 동물학대 양형기준 설정 주요 사례 1부, 끝.



(사) 동물권행동 카라



담당 윤성모 팀장 신주운 그룹장 김현자 대표 전진경
시행 카라-2403-가A-049 (2024. 3. 21.) 접수 ()
우 039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서교동 457-5) / <https://ekara.org>
전화 02)3482-0999 전송 02)3482-8835 / info@ekara.org / 공개

동물학대 양형기준 설정 주요 사례 제출

동물권행동 카라는 우리 사회의 동물학대 범죄 방지와 예방을 위해 사건을 고발하고 처벌 결과를 사회에 알리는 등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입니다.

귀 기관의 동물학대 양형기준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단체에서 대응했던 주요 사례와 관련된 의견을 드립니다. 양형 기준 설정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 출 인 :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
※ 동물학대 대응 담당 : 윤성모 활동가(010-2695-2065)

양형위원회 귀중

1. 반려견 복순이 임의 도살 사건

가. 전주지검 정읍지청 임인숙, 이진용 2022형제4055 : 기소유예

나.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 2023고불항(전주) 제158, 176호 : 항고 기각

다. 대검찰청 대불재항(고발)597번 : 재항고 기각

라. 사건 개요

- 오 씨에게 학대 당해 상해 입은 반려견 '복순이'에게 보호자 임 씨는 신속한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았고 살아있는 복순이를 이 씨에게 넘겨 도살 처리를 요청함
- 이 씨는 복순이를 목매달아 죽이고 도살함
- 동물권행동 카라와 비글구조네트워크에서 보호자 임 씨와 도살자 이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및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



오 씨에게 학대 당해 상해를 입고 출혈이 있었으나 안정적으로 앉아있었던 복순이

다. 문제점

- 개를 목매달아 죽이는 것은 명백한 동물학대임에도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피의자의 생활고 및 목매달아 죽였으나 '용동이로는 때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검찰 시민위원회 결과를 참고하였다며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미 목매달아 죽인 학대 혐의가 있는데 용동이로 때려야 혐의가 인정된다는 식의 이유를 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목매달아 죽이는 것이 이미 잔인하게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 시민위원회는 기관의 요구사항을 맞춰주는 경향이 있을텐데 시민위원회가 과연 독립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여 표결된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2. 아기 고양이 태인이 살해 사건

가. 전주지검 정읍지청 정진구 2023형제3701 : 구약식 청구

나. 정읍지원 형사약식계 2023고약1306 벌금 300만원 명령

다. 사건 개요

- 정 씨가 가만히 앉아있던 고양이를 향해 멀티탭을 내리쳐 단번에 죽음에 이르게 함.
- 학대 장면이 CCTV에 모두 촬영됨
-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쓰레기처리장에 가만히 앉아있던 고양이 '태인'을 내리치는 장면(CCTV)

라. 문제점

- 동물보호법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임에 이르게 할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형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식 청구는 처벌 형량이 벌금형만 있는 등 주로 경미한 사건에 내려지는 결정임에도 정읍지청은 구약식 청구를 했습니다.
- 동물권행동 카라는 정읍지청 담당 검사와 유선 통화로 법원에 약식 결정을 청구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검사는 “사안의 중함과 피의자 전력을 종합하여 ‘동물학대 양형기준’ 대로 처리했다”라고 답했습니다. 동물학대 양형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냐고 물으니, “우리의 자체 기준이 있다. 혼자 결정한게 아니고 ‘라인’이 있어 그렇게 다 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두 동물학대 범죄 사건에 대한 정읍지청의 처분을 경험하며, 정읍지청의 결정과 그 사유가 불합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아기 고양이 태인이 살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약식 청구와 그것을 받아들인 정읍지원의 결정에도 아쉬운 입장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동물학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보니 야기되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형위원회에서 동물학대 양형기준 마련 시 위의 두 사례에 대한 분석과 관련된 검토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동물학대 양형기준이 수립될 수 있길 바랍니다.

2024년 3월 20일
동물권행동 카라

양형위원회 귀중

[별지 3]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팀 의견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양형기준 신설 건의

◆ 대통령께서 관심가지고 추진 중이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형사처벌 양형기준 신설을 요청드립니다

□ 추진 배경

-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 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동 붕괴사고와 같이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 우리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처벌규정 강화 추진

□ 형사처벌 현황

- (처벌현황) 정부·입법부의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강화 기조에도 불구, 실제 처벌은 벌금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
- 불법하도급과 동일한 형량*인 대부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폐기물 불법매립은 법정형 대비 30%수준에서 징역 권고
- * (법정형)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건설산업기본법)
- 반면 불법하도급의 경우 건설사에게 3백만원~1천만원 벌금, 대표자에게는 1백만원~2천만원 벌금 부과
- (양형기준) 양형위원회는 8차례 위원회 운영을 통해 46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운영중이나, 불법하도급 관련 양형 기준 부재
-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안전사고로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 시, 처벌수준 강화를 위한 양형기준 신설 필요

□ 양형기준 신설 시 기대효과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 개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설현장 안전 제고